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0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 (B)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B/A (%)	(C)	C/A (%)	(D)=(B)-(C)	D/A (%)
계	289,051,563,000	461,257,145,670	474,727,048,452	103	376,261,426,624	82	98,465,621,828	21
일반회계	237,737,342,000	390,108,715,280	404,280,334,513	104	325,220,513,054	83	79,059,821,459	20
특별회계	51,314,221,000	71,148,430,390	70,446,713,939	99	51,040,913,570	72	19,405,800,369	27

나. 세입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미수납액		
				B/A (%)	(C)	C/A (%)	(D)=(B)-(C)	D/A (%)
계	289,051,563,000	461,257,145,670	482,736,036,697	105	474,727,048,452	103	8,008,988,245	2
일반회계	237,737,342,000	390,108,715,280	409,982,048,718	105	404,280,334,513	104	5,701,714,205	1
특별회계	51,314,221,000	71,148,430,390	72,753,987,979	102	70,446,713,939	99	2,307,274,040	3

다. 세출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집행잔액 (D)		
				B/A (%)	C/A (%)			
계	289,051,563,000	461,257,145,670	376,261,426,624	82	71,252,833,450 (64,879,160)	15	13,742,885,596	3
일반회계	237,737,342,000	390,108,715,280	325,220,513,054	83	56,052,583,530	14	8,835,618,696	2
특별회계	51,314,221,000	71,148,430,390	51,040,913,570	72	15,200,249,920 (64,879,160)	21	4,907,266,900	7

※ 이월액은 ()안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98,465,621,828 (64,879,160)	38,842,543,630 (64,879,160)	8,733,841,190	23,611,569,470	1,294,464,074	25,983,203,464
일반회계	79,059,821,459	34,721,696,080	8,278,163,330	13,052,724,120	877,297,754	22,129,940,175
특별회계	19,405,800,369 (64,879,160)	4,120,847,550 (64,879,160)	455,677,860	10,558,845,350	417,166,320	3,853,263,289

※ 이월액은 ()안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미포함한 수치임

※ 순세계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보조금집행잔액

마. 회계별재무제표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자 산	부 채	순자산	수 익	비 용	운영차액
일반회계(A)	1,819,394,160,522	11,602,080,843	1,807,792,079,679	227,764,757,076	151,563,479,173	76,201,277,903
공기업특별회계(B)	65,688,175,028	3,584,057,049	62,104,117,979	3,968,783,945	5,891,898,664	△1,923,114,719
기타특별회계(C)	153,770,137,755	1,200,705,140	152,569,432,615	26,271,307,110	7,867,290,044	18,404,017,066
기 금(D)	3,195,438,483		3,195,438,483	727,875,327	736,292,420	△8,417,093
내부거래(E)	26,772,538,000		26,772,538,000	4,041,746,000	4,041,746,000	
합 계 (A+B+C+D-E)	2,015,275,373,788	16,386,843,032	1,998,888,530,756	254,690,977,458	162,017,214,301	92,673,763,15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나. 기타사항

-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붙임
-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

2008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09. 5. 6 ~ 5. 25(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함명섭(총괄)
 - 검사위원 : 김시한(일반회계 세출)
 - 검사위원 : 김진석(일반회계 세출)
 - 검사위원 : 임준환(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특별회계세입세출)
 - 검사위원 : 고재용(일반회계 세입)

평창군결산검사위원회

2008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평 창 군 수 귀하

2009년 5월 25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9년 5월 6일부터 2009년 5월 25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반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대표감사위원 함 명 섭 (인)

감 사 위 원 김 시 한 (인)

감 사 위 원 김 진 석 (인)

감 사 위 원 임 준 환 (인)

감 사 위 원 고 재 용 (인)

2008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목 차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입	5
2) 세출	6
2. 일반회계	
1) 세입	7
2) 세출	7
3. 특별회계	
1) 세입	8
2) 세출	9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10
2) 채권	10
3) 채무	11
4) 공유재산	11
5) 물품	12
5. 세입·세출외현금	12
6. 검사결과	13
7.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15

2008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2008연도의 일반회계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7)	823,496,753,517	841,196,291,761	833,926,982,065	889,013,160	6,380,296,536
당해년도 (2008)	461,257,145,670	482,736,036,697	474,727,048,452	767,166,300	7,241,821,945

가. 세입결산 개요

- 2008년도 실제수납액은 474,727,048,452원으로 예산현액의 103%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로 나타남.

※ 2007년도

- 실제수납액 : 833,926,982,065원 (예산현액의 101%)
- 징수결정액 : 841,196,291,761원 (예산현액의 102%)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7)	255,050,669,000	568,446,084,517	823,496,753,517	629,268,300,562
당해년도(2008)	289,051,563,000	172,205,582,670	461,257,145,670	376,261,426,624
익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72,205,582,670	22,022,870,285	204,658,681,503	1,709,307,773	30,743,791,060
71,252,833,450 (64,879,160)	13,742,885,596	98,465,621,828	1,294,464,074	25,983,203,464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3% 증가한 289,051,56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72,205,582,6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1,257,145,670원임.
- 지출액은 376,261,426,624원으로 예산현액의 82%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7)	823,496,753,517	172,205,582,670	39,470,594,830	112,302,670,850	20,432,316,990	21%
당해연도 (2008)	461,257,145,670	71,252,833,450 (64,879,160)	38,907,422,790 (64,879,160)	8,733,841,190	23,611,569,470	15.4%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7)	756,984,524,567	771,882,158,921	766,613,167,208	889,013,160	4,379,978,553
당해연도 (2008)	390,108,715,280	409,982,048,718	404,280,334,513	765,370,750	4,936,343,455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404,280,334,513원으로 예산현액의 104%이고 징수결정액은 409,982,048,718원으로 예산현액의 10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임.

※ 2007년도

- 실제수납액 : 766,613,167,208원 (예산현액의 101%)
- 징수결정액 : 771,882,158,921원 (예산현액의 102%)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7)	202,155,949,000	554,828,575,567	756,984,524,567	589,430,864,338
당해연도(2008)	237,737,342,000	152,371,373,280	390,108,715,280	325,220,513,054
익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52,371,373,280	15,182,286,949	177,182,302,870	1,699,210,113	23,111,719,477
56,052,583,530	8,835,618,696	79,059,821,459	877,297,754	22,129,940,175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237,737,34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2,371,373,28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90,108,715,280원임
- 이월사업비는 56,052,583,530원으로 예산현액의 14.3%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7)	756,984,524,567	152,371,373,280	33,465,889,280	112,302,670,850	6,602,813,150	20%
당해연도 (2008)	390,108,715,280	56,052,583,530	34,721,696,080	8,278,163,330	13,052,724,120	14.3%

3.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7)	66,512,228,950	69,314,132,840	67,313,814,857	0	2,000,317,983
당해연도 (2008)	71,148,430,390	72,753,987,979	70,446,713,939	1,795,550	2,305,478,490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70,446,713,939원으로 예산현액의 99%이며, 징수결정액은 72,753,987,979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임.

※ 2007년도

- 실제수납액 : 67,313,814,857원 (예산현액의 101%)
- 징수결정액 : 69,314,132,840원 (예산현액의 104%)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7)	52,894,720,000	13,617,508,950	66,512,228,950	39,837,436,224
당해년도(2008)	51,314,221,000	19,834,209,390	71,148,430,390	51,040,913,570
익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9,834,209,390	6,840,583,336	27,476,378,633	10,097,660	7,632,071,583
15,200,249,920 (64,879,160)	4,907,266,900	19,405,800,369	417,166,320	3,853,263,289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51,314,22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9,834,209,39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1,148,430,390원임.
- 이월사업비는 15,200,249,920원으로 예산현액의 21%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7)	66,512,228,950	19,834,209,309	6,004,705,550		13,829,503,840	30%
당해연도 (2008)	71,148,430,390	15,200,249,920 (64,879,160)	4,185,726,710 (64,879,160)	455,677,860	10,558,845,350	21%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2007)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8)
		계	수납액	지출액	
계	3,103,041,688	△44,937,847	728,602,573	773,540,420	3,025,103,841
식품진흥기금	101,990,265	3,228,264	9,099,264	5,871,000	105,218,529
사회복지기금	2,270,444,233	111,194,768	202,194,768	91,000,000	2,381,639,001
재난관리기금	730,607,190	△159,360,879	517,308,541	676,669,420	571,246,311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3개로서
기금현재액은 2007년도 3,103,041,688원 보다 44,937,847원이 감소한
3,058,103,841원을 관리하고 있음.

2) 채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2007)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8)
합 계	5,861,612,204	825,789,132	802,162,232	5,885,239,104
일반회계	3,822,709,470	557,393,530	603,742,550	3,776,360,450
주택사업특별회계	1,358,956,310	78,377,480	69,280,000	1,368,053,79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679,946,424	190,018,122	129,139,682	740,824,864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2007년말 현재액 5,861,612,204원에서
- 2008년도에 825,789,132원이 발생, 802,162,232원이 소멸되어
- 2008년도말 현재액은 5,885,239,104원임.

3) 채 무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0,311,270,000	△1,644,180,000		1,644,180,000	△6,432,000	8,673,522,000
일 반 회 계	5,648,070,000	△351,380,000		351,380,000	△6,432,000	5,303,122,000
특 별 회 계	소 계	4,663,200,000	△1,292,800,000			3,370,400,000
	상수도사업 주택 사업	4,663,200,000	△1,292,800,000			3,370,400,00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2007년도말 현재액 10,311,270,000원에서
- 2008년도에 1,644,180,000원이 소멸되어
- 2008년도말 현재액은 8,673,522,000원임.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용도별	2007년말현재액	2008년말현재액	증감(△)	
합 계	250,554,836,165	1,779,858,422,294	1,529,303,586,129	
행 정 재 산	계	214,534,806,165	1,674,186,183,249	1,459,651,377,084
	공공용재산	158,660,728,000	1,638,315,855,971	1,479,655,127,971
	공용 재산	54,009,353,165	34,045,800,692	△19,963,552,473
	기업용재산	1,864,725,000	1,824,526,586	△40,198,414
보 존 재 산	-	-	-	
잡 종 재 산	36,020,030,000	105,672,239,045	69,652,209,045	

가. 2008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2007년말 현재액 250,554,836,165원에서 1,529,303,586,129원이 증가한 1,779,858,422,294원으로

- 토지 126,883,000㎡ 296,228,285,804원
- 건물 180,396㎡ 173,487,276,967원
- 기타 1,210,743건 1,310,142,859,523원임.

5) 물 품

(단위 :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8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23종	수량	268	43	-	43	6	-	6	305
	금액	1,950,722	371,145	-	371,145	74,650	-	74,650	2,247,217

가. 200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007년말 현재액 1,950,722,260원보다 296,495,360원이 증가한 2,247,217,620원으로서 신규취득 371,145,36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으로 74,650,000원 처분함.

5.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08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4,662,343,409	△1,965,486,113	8,816,031,047	10,781,517,160	2,696,857,296
위 탁 금	1,488,412,464	△1,309,743,230	1,121,359,200	2,431,102,430	178,669,234
보 증 금	1,474,009,330	△830,458,640	282,255,370	1,112,714,010	643,550,690
일시보관금	1,110,205,639	△350,759,643	3,271,715,338	3,622,474,981	759,445,996
잡종금등기타	589,715,976	525,475,400	4,140,701,139	3,615,225,739	1,115,191,376

가. 2008년도말 현재액은 2,696,857,296원으로
2007년도말 4,662,343,409원보다 1,965,486,113원이 감소함.

※ 읍·면, 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 포함 금액임.

6. 검사결과

□ 총 평

- 2008년도 일반회계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2009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 관련 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등으로 결산의 적법성과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 일부 공무원들은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됨

○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 실제수납액은 404,280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9,98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로 극히 세입상태가 양호하였음.
- 예산액은 237,737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2,37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90,108백만원으로 지출에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나타났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 세입결산액은 70,44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041백만원임.

○ 세입세출외현금은

- 현재액 2,697백만원으로 2007년보다 1,96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앞으로도 지방세의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예산이 이월되어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건전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주요 지적사항

○ 평창군 금고수납대행점 세입금 이체지연

- 평창군 금고수납대행점계약서 제3조 규정에 따라 세입금전액을 각 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인 7일, 13일, 17일, 27일 익월2일(이체시한12시)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함에도 수납대행점 27개소에서 1,601건(최소1, 최대 226건)을 지연이체 하였음.

○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부적정

-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 12,990천원(이월)을 행정절차 없이 징수유예로 결산정리 하였음

○ 기금결산 부적정

- 재난관리기금 140,000천원을 집행함에 있어 2008. 09. 19에 지급 후 2008. 10. 01에 반환받은 후 2008. 12. 17에 다시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고액채납자 방치

- 2006.11.10 사업계획승인한 (주)가은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채납 후 행정처분 없이 방치하였음.

○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 미정리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장기보관된 현금에 대하여는 채권소멸사유 등을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잡수입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탄면외 4개면에서 8,306천원을 미정리 하였음.

지적(건의)사항 및 검사자 의견

지 적 (건 의)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비고
1	평창군 금고 수납대행점 세입금 이체지연(재무과)	
2	세외수입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총당요구 부적정(재무과)	
3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환경과/상하수도사업소)	
4	기금결산 부적정(건설방재과)	
5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고액체납자 방치(도시과)	
6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 미정리(미탄면외4)	
7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문화체육과)	건의
8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문화체육과)	건의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1
- 제 목 : 평창군 금고 수납대행점 세입금 이체 지연
- 현 황
 - 수납대행점 세입금 이체 지연 현황(붙임)
- 문제점
 - 평창군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6조 및 평창군 금고 수납대행점계약서 제3조(수납금의 예금, 송금, 이체) 규정에 따라 수납대행점은 세입금 전액을 각 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인 7일, 12일, 17일, 27일 익월 2일 (이체시한 12시)까지 세입금의 영수필통지서와 세입금집계표를 첨부하여 평창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수납대행점 27개소에서 1,601건(최소1, 최대226건)을 지연 이체한 사실임

※ 감사자 의견

- 금고 수납대행점 27개소에 대하여 금고업무 취급계약서에 따라 특별 금고검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연 이체한 1,60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 바람.

수납대행점 세입금 이체지연 현황

수납은행명	자료수	비고
합 계	1,601	
봉평신협	63	
진부농협	226	
대관령원에농협	86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129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봉평	111	
봉평농협	167	
진부신협	86	
대화농협	187	
횡계새마을금고	74	
대관령신협	50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대화	53	
미탄신협	61	
봉평농협장평지소	70	
대관령유천농협	59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대관령	27	
봉평농협용평	20	
대화신협	24	
대관령원예장평	13	
평창농협방림	15	
대관령농협	19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진부	21	
평창농협	18	
농협평창군지부	12	
평창농협미탄	3	
대화농협본동	5	
평창농협계촌	1	
진부농협중앙	1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2

○ 제 목 : 세외수입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충당요구 부적정

○ 현 황

-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및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납입고지서의 취소와 정정발행 등 징수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별지 제94호 서식)하여야함

○ 문제점

- 환경과에서는 용평리조트 외 2개사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처리 일반 부담금을 다량폐기물처리비 세입과목으로 금고에 착오 납입한 후 세외 수입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충당 요구를 한 사실임

※ 감사자 의견

- 세입과목 착오로 금고에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징수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93호서식>

세입금정정원부 No.

세입금정정요구서 No.

구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구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연월			연월		
회계별			회계별		
주관 징수관			주관 징수관		
과목			과목		
영수일자			영수일자		
영수장소			영수장소		
납입금액			납입금액		
납입자명			납입자명		
사유			사유		
<p>년 월 일</p>			<p>이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징수관 인</p> <p>금고 귀하</p>		

세입금정정필통지서

년 월 일자

제 호

구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년월		
사유		

세입금 정정요구서를
처리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94호서식>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

년도	회계	세입 (출)	국 과
구	분	현 기 재 사 항	정 정 사 항
소	관		
회	계		
연	도		
과	목		
지	급		
명	령		
번	호		
수입·지출연월일			
금	액		
채	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년</p> <p>월</p> <p>일</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직</p> <p>성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p>			
<p>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계</p> <p>지출원</p> <p>(수입금출납원)</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p> <p>인</p> </div> </div>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3

○ 제 목 :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

○ 현 황

- 사용료수입(212-03) 징수유예 12,990,640원

○ 문 제 점

- 하수도사용료 이월액을 행정절차 없이 징수유예로 결산정리

※ 감사자 의견

○ 징수유예로 처리된 이월액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결산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4
- 제목 : 기금결산 부적정
- 현황

(단위 : 원)

종류별	결산서상			검사결과		
	계	정기예금	보통예금	계	정기예금	보통예금
재난관리기금	571,246,311	-	571,246,311	571,246,311	566,855,821	4,390,490

○ 문제점

- 결산서와 기금통장 대조결과 현황 상이
- 재난관리기금(하진부리 산림피해복구사업) 140,000천원을 집행함에 있어 2008.09.19 지급후 2008.10.01반환, 2008.12.17 다시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

※ 감사자 의견

- 검사결과와 부합하도록 결산실시
-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없도록 처리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5

○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고액채납자 방치

○ 현 황

- 채 납 자 : (주)가은
- 채 납 액 : 154,438,130원
- 최초납기 : 2007.03.05

○ 문 제 점

- 2006.11.10 사업계획승인한 (주)가은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채납 후 행정처분 없이 방치

※ 검사자 의견

- 미착공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후 재산압류 또는 결손 처분으로 채납액 정리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6
- 제 목 :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 미정리
- 현 황

(단위 : 원)

읍면별	금 액	읍면별	금 액
계	8,306,056	용평면	1,927,001
미탄면	835,205	진부면	3,972,070
방림면	163,390	대관령면	1,408,390

○ 문제점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장기보관된 현금에 대하여는 채권소멸사유 등을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잠수입 등으로 처리하여함에도 5개 면에서 미정리 하였음

※ 검사자 의견

- 면별 현금별로 보관목적은 파악하여 잠수입 등으로 세입처리

건의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건의사항

- 번 호 : 7
- 제 목 :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
- 현 황
 - 사업기간 : 2007년 1월 ~ 2011년 12월
 - 위 치 : 대관령면 횡계리 346번지 일원(면적49,290m²)
 - 사업내용 : 운동장400m트랙, 100m보조트랙, 트레이닝장 등
 - 사 업 비 : 10,300백만원(국4,250 / 도2,100 / 군11,950)
- 문제점
 - 국비지원 비율 축소(당초50%→30%)로 계획된 국도비 전액 확보의 어려움
 - 2009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국도비 지원, 군비부담금 없이 토지보상금만 계상, 1회추경시 사업비 490백만원을 확보해야함

※ 검사자 의견

- 국도비 확보대책 강구(중앙 및 관련부서 지원요청)
 - 계획된(2010.01~2011.12) 일정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특단의 노력 경주요망

건의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건의사항

○ 번 호 : 8

○ 제 목 :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현 황

- 사업기간 : 2006년 01월 ~ 2011년 12월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산64번지 일원(40,385m²)
- 사 업 량 : 국민체육센터(실내체육관)1동, 인조잔디구장1면, 조경시설 등
- 사 업 비 : 25,400백만원(국1,000 / 기3,300 / 도4,300 / 군16,800)

○ 문제점

- 미확보 예산에 대한 추가확보가 어려움

※ 검사자 의견

- 미확보 예산은 부서별로 확보·완공하여 2011년 6월 본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	평창군 금고 수납대행점 세입금 이체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수납대행점 27개소에 대하여 금고 업무 취급계약서에 따라 특별금고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검사결과 지연 이체한 1,60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즉시 부과 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와 수납대행점에 대해 2009년 7월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영수필 통지서 송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할 계획임 	재무과
2	세외수입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충당요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에서는 용평리조트 외 2개사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처리 일반부담금을 다량 폐기물처리비 세입과목으로 금고에 착오 납입한 후 세외수입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충당 요구를 한 사실임 ○ 세입과목 착오로 금고에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징수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담당자의 전산프로그램 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메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동일한 사항 발생시 지적된 절차에 따라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실과에 업무관련 안내 공문을 시행하겠음 	재무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3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사용료 이월액을 행정절차 없이 징수유예로 결산정리 ○ 징수유예로 처리된 이월액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결산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결산시 기재란 오류입력으로 최종 결산 자료에는 이월액을 사유별로 수정하였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음 	환경과 / 상하수도사업소
4	기금결산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서와 기금통장 대조결과 현황 상이 ○ 재난관리기금(하진부리 산림피해 복구 사업) 140,000천원을 집행함에 있어 2008. 09. 19 지급 후 2008. 10. 01반환, 2008.12.17 다시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 ○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없도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결과와 부합하도록 결산실시(즉시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의 구분을 명확히 통보하여 향후 결산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하겠음 ○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없도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배정사항과 혼동한 사례로 꾸준한 업무연찬 등 업무능력 배양을 통해 향후 사업비 집행에 오류가 없도록 하겠음 	건설방재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5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고액채납자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11.10 사업계획승인한 (주)가온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채납 후 행정처분 없이 방치 ○ 미착공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 후 재산압류 또는 결손처분으로 채납액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부담금은 200m²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실제 건축 착공을 아니하였을 경우 실질적 납부의무는 없음(허가취소의 경우 전액 환급). 실효가 없는 납부시기에 대한 규정은 많은 논란이 되어 현행법에서 사용승인 신청일까지로 개정되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장을 송부 하였으나 2009.5월 현재까지 미착공상태로, 건축공사가 완공되어도 사용승인 신청시 미납의 경우 사용승인 처리가 불가하므로 징수에 어려움이 없음. - 다만 현재까지 미착공된 (주)가온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공사착공 독려 후 미착공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취소처분 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본 부담금도 함께 부과취소할 계획임 	도시과
6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 미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장기보관된 현금에 대하여는 채권소멸사유 등을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압수입 등으로 처리하여함에도 5개면에서 미정리 하였음 ○ 면별 현금별로 보관목적은 파악하여 압수입 등으로 세입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보관된 8,306,056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관목적, 채권소멸사유 등을 파악 후 기타압수입 등으로 처리하겠음 	미탄/방림/ 용평/진부/ 대관령면